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수익사업 승인 등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제출서류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,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한편, 현행 유효기간 연장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어 현행 법령상 승인철회·승인취소 사유에 대해서만 유효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수익사업”을 “사업계획서(수익사업”으로, “서류”를 “서류를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서류”를 각각 “서류(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,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, 참전유공자단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“법 제24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”를 “법 제24조의1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법 제24조의12제1항 각 호”를 “법 제24조의12제1항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5호 또는 제1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

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시행규칙 제13조제5항·제13조의2제6항”을 “시행규칙 제13조제5항·제13조의2제5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익사업 승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단체명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	전화번호
	사무소 소재지	

신청내용	수익사업명(업종 및 품목)
	사업장 소재지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- 사업계획서(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를 포함합니다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-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,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(같은 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합니다) -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- 사업자등록증명 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- 토지등기사항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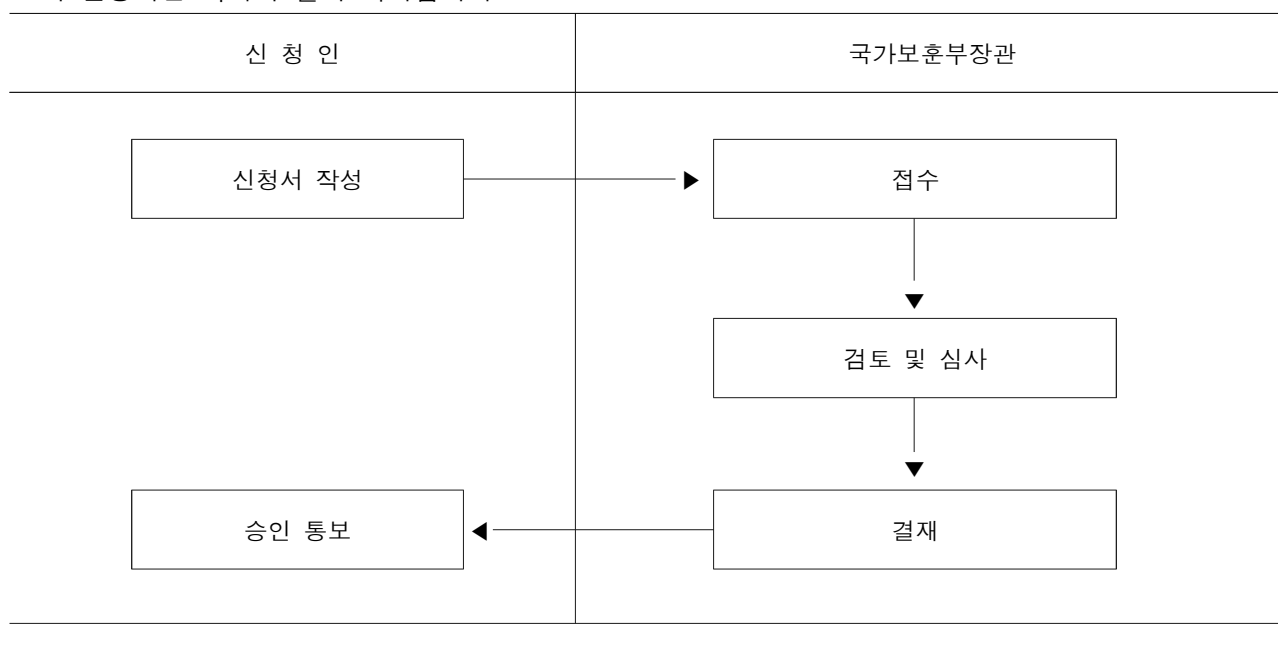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30일		
신청인	단체명			법인등록번호		
	대표자			전화번호		
	사무소 소재지					
신청내용	종전 수익사업 내용	수익사업명(업종 및 품목)		수익사업 승인서		
				발급일	발급번호	
		사업장 소재지				
	변경 내용 및 그 사유	변경 내용				
변경 사유						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3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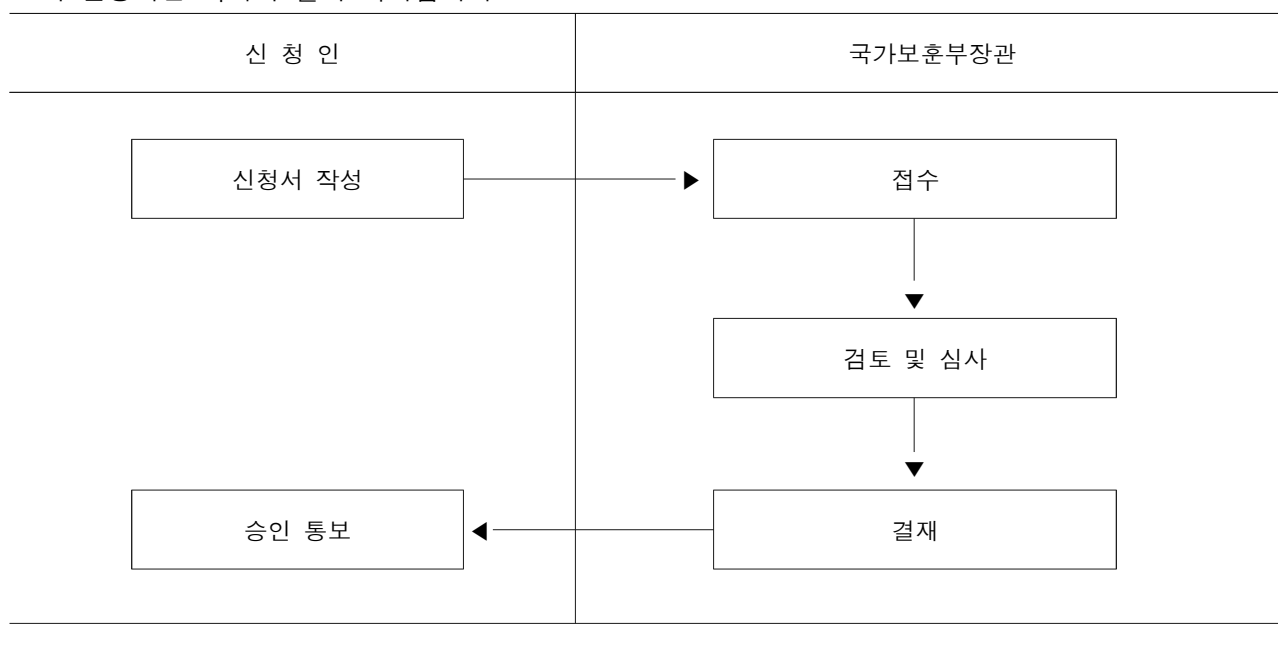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 변경계획서(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 위원회 심의 의결서 3.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, 건물등기 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 참전자회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) 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(같은 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합니다) 5.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(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6.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명 2.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. 토지등기사항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	
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	
		60일		
신청인	단체명	법인등록번호		
	대표자	전화번호		
	사무소 소재지			
신청내용	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수익사업 내용	수익사업명(업종 및 품목)	수익사업 승인서	
			발급일	발급번호
		사업장 소재지		
	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그 사유	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		
		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		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 위원회 심의 의결서 -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,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) - 그 밖에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1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- 사업자등록증명 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- 토지등기사항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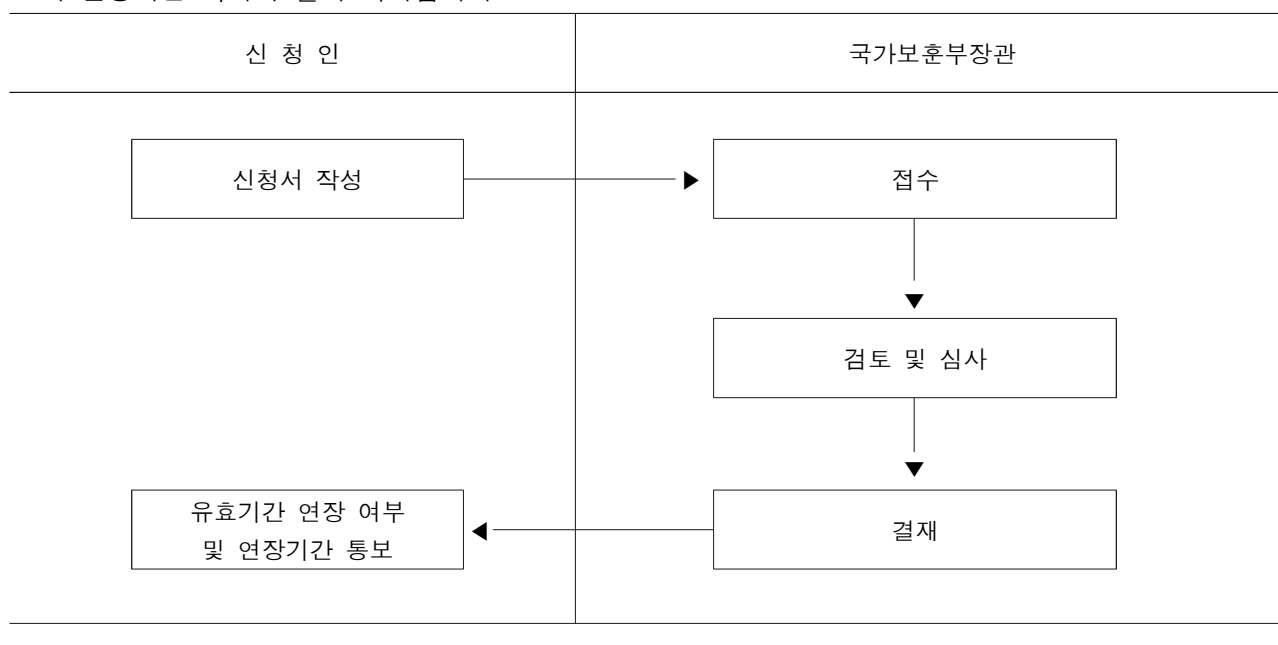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)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13조(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사업계획서	<u><삭 제>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<u>서류</u>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류(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,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, 참전유공자단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)</u>

4. (생략)

5.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

6. (생략)

② 법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
4. (현행과 같음)

1. 사업계획서(수익사업----- -- 서류를 포함한다)

5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서류(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,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, 참전유공자단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)

4. ~ 6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제13조의2(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) ①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(생략)

2. 그 밖에 법 제24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.

1. (생략)

2. 법 제24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2조에 따른 승인 기준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3조의2(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법 제24조의12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-----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을 충족할 것

3.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
법 제24조의5를 위반한 사실
이 없을 것

4.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
법 제24조의12제1항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
없을 것

③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
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
장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가
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
신청을 할 때에 「중소기업제품
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
법률」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
생산확인증명서(그 유효기간의
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
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
우로 한정한다)를 제출한 경우
에는 법 제24조의3제3항제2호
및 이 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른
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
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④ · ⑤ (생략)

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

<삭 제>

2. -----
-- 법 제24조의12제1항제1호
· 제2호 · 제3호 · 제5호 또는
제11호---

<삭 제>

③ · ④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
같음)

⑤ ----- 제4항----

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 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해 야 하고, 유효기간을 연장하 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 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 급해야 한다. ⑦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⑥ (현행 제7항과 같음)
---	---